

## 1. 개정(제정)이유

'16년 경제정책방향 내 규제프리존 도입 계획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출원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첨단의료복합단지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제도 도입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특허법」 제61조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료. 다만, 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은 2건 이하로 한다.

가.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전액

나. 개인, 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. 다만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85로 한다.

다. 공공기관 또는 전담조직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

라. 중견기업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선심사신청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

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<u>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<u>특허법</u>」 제61조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<u>우선심사신청료</u>. 다만, 연간 감면받을 수 있는 <u>우선심사신청은 2건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가. <u>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전액</u></p> <p>나. <u>개인, 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. 다만 개인 중 만</u></p>

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85로 한다.

다. 공공기관 또는 전담조직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

라. 중견기업인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

③ ~ ⑧ (생략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